

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1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7. 5. 4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적극적인 생산활동으로 1천억원 이상 매출실적을 달성한 기업에게 매출의 탑을 수상하여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기업활동을 촉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포상의 종류에 매출의 탑을 신설함(안 제4조).
- 나. 매출의 탑의 수상대상과 수상부문에 대하여 정함(안 제22조의3).
- 다. 매출의 탑의 심사기준을 정함(안 제24조).
- 라. 대전광역시 매출의탑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정함(안 제36조의3).
- 마. 매출의 탑의 시상횟수 및 인원을 정함(안 제42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대전광역시 기업인·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
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의사항 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- (2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 · 폐지 등 없음
- (3) 입법예고 : 2007. 3. 23 ~ 4. 12 / 접수의견 없음

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중 “대전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대전광역시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8. 매출의 탑

제10조 각 호외의 부분, 제13조 각 호외의 부분, 제14조 각 호외의 부분 및 제23조 각 호외의 부분중 “각호의 1”을 각각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3(매출의 탑) ①매출의 탑은 적극적인 생산활동으로 일정한 매출실적을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여한다.

②매출의 탑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1천억원 매출의 탑
2. 2천억원 매출의 탑
3. 3천억원 매출의 탑
4. 5천억원 매출의 탑
5. 1조원 매출의 탑

제24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매출의 탑 : 시장예정일 현재 1년 이상 시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중 전년도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을 달성한 기업

제27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대전광역시 매출의탑심사위원회

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의3(매출의탑심사위원회) ①매출의 탑 수상기업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매출의탑심사위원회를 둔다.

②대전광역시 매출의탑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에서 행한다.

제42조제2항중 “장애극복상은 3인을”을 “장애극복상은 3인, 매출의 탑은 1천억원 이상 매출을 달성한 기업을 부문별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p>제23조(공적예비 심사) 수상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저촉될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	<p>제23조(공적예비 심사) ----- --각 호의 어느 하나----- --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4조(분야별 심사기준) (생략)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24조(분야별 심사기준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매출의 탑 : 시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시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중 전년도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을 달성한 기업</p>
<p>제27조(분야별 위원회) (생략)</p> <p>1. ~ 10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27조(분야별 위원회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대전광역시 매출의탑심사위원회</p>
<p><신설></p>	<p>제36조의3(매출의탑심사위원회) ①매출의 탑 수상기업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매출의탑심사위원회를 둔다. ②대전광역시 매출의탑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지원기관 협의회에서 행한다.</p>
<p>제42조(시상) ① (생략)</p> <p>②경제과학대상, 문화상, 체육대상, 청소년대상, 대전여성상, 환경상, 건축상 및 광고대상의 시상인원은 각 분야별 또는 부문별로 1인, 장애극복상은 3인을 선정하되,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	<p>제42조(시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----- ----- 장애극복상은 3인, 매출의 탑은 1천억원 이상 매출을 달성한 기업을 부문별로----- -----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관련 법규

□ 대전광역시 기업인·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

제3조(책무) 대전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기업, 기업인 및 과학기술인의 활동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인·과학기술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예우 및 지원대상)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·과학기술인(이하 “우수기업인 등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부, 시 또는 과학관련 기관·단체 등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·과학기술인
2.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유망중소기업
3. 신기술개발, 고용증대, 노사협력 및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이나 기업인·과학기술인

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07년 7월 19일
행정자치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5월 4일 대전광역시장
2. 회 부 일 자 : 2007년 5월 7일
3. 상 정 일 자 : 제166회 대전광역시의회(임시회)
제4차 행정자치위원회(2007. 5. 21)
상정, 심사, 유보
제168회
대전광역시의회(제1차정례회)
제6차 행정자치위원회(2007. 7. 19)
상정, 심사, 원안가결

II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조찬호)

1. 제안이유

적극적인 생산활동으로 1천억원 이상 매출실적을 달성한 기업에게 매출의 탐을 시상하여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기업활동을 촉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포상의 종류에 매출의 탐을 신설함(안 제4조).
- 나. 매출의 탐의 수상대상과 수상부문에 대하여 정함(안 제22조의3).
- 다. 매출의 탐의 심사기준을 정함(안 제24조).

라. 대전광역시 매출의탑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정함(안 제36조의 3).

마. 매출의 탑의 시상횟수 및 인원을 정함(안 제42조).

Ⅲ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한봉전)

○ 본 조례 안은

기업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 정규모이상 매출실적을 달성한 기업을 선정 매출의 탑을 시상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IV. 토 론 요 지 : 생 략

V. 질의답변요지 : 생 략

VI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V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